

건설경제

2014. 11. 28.

<데스크 칼럼>

相生의 조건...윗물이 맑아야



김정석
건설경제신문 정경부 차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뜻의 속담이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잘해야 아이들이 잘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잘해야 직원들이 잘하고,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잘해야 국민이 잘하게 될 것이다. 흔히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경계하고 술선수범을

강조할 때도 많이 쓰이는 속담이다.

새삼스러운 속담으로 글을 시작한 이유는 이 속담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상생’을 실천하는 데 꼭 명심해야 할 경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생이란 양자 간 상호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힘 있는 자, 바로 윗물이 베풀어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강자와 약자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약자가 강자와 함께 살아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乙은 甲에게, 丙은 乙에게, 丁은 丙에게 상생을 기대하고 바라다. 모두 윗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산업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수직적 구조가 어느 산업보다 견고한 곳이 건설산업이기 때문에, 자재·장비나 현장 인력은 하도급사에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수직적 단계에 있는 각 주체가 위만 바라보고 아래는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예산 부족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적자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사가 이윤을 넉넉히 쳐서 하도급공사를 줄 리가 없다. 오히려 적자 폭을 같이 나누자고 할 것이다. 휘청거리는 하도급사 역시 누구를 배려할 여력이 있을 수 없다. 오래된 협력관계는 사라지고 공사를 접고 심지어는 회사문을 닫는다. 회사를 접는 마당에 원도급사에 ‘같이 죽자!’라고 보복을 하는 모습도 흔하다. 문을 닫은 하도급사에서 돈

을 받지 못한 장비업체나 근로자는 원도급사에 찾아와서 떼인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여기서는 같이 살자는 상생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같이 죽자는 공멸만 눈에 보인다. 이처럼 상생에 반하고 오히려 공멸을 부추기는 행태들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사로, 다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하도급사에서 장비업체나 현장인력으로 전가된다. 맑은 물이 아닌 썩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되돌리려면 수직관계 층층의 갑·을·병·정·위만 바라보지 말고 모두 자신보다 아래를 살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건설경제신문>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협·단체와 공공기관, 종합건설사, 전문 및 설비건설사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이들은 그저 맑은 윗물을 받아 아래로 그대로 흘러보낸 것이 아니다. 윗물이 맑지 못해도 그 물을 깨끗이 정화해 다시 아랫물로 흘러보냈다. 그리고 그 정화의 과정에는 각고의 노력과 사명감은 물론이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 같은 개별 주체들의 상생 실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멸이 아우성치는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곱씹어 보면 시스템이나 구조적 모순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시스템과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수 있다면 상생은 훨씬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확산의 첫 단추는 윗물이 돼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강자일수록 책임도 크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산업이라는 강의 최상위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원의 물이 맑지 못하면 강 전체가 맑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에 흐르는 강의 상수원은 어딜까. 공공부문에서는 바로 정부와 발주기관이 될 것이다. 상생의 첫 출발점인 이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요구한 상생을 스스로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맑은 물을 내려 보냈는지 썩은 물을 내려 보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2014. 11. 27.

“국내 플랜트현장 외국인 고용 허용을”

설비건설업계 “노조갈등·임금인상으로 더는 못 버텨” … 제도 개선 건의

설비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플랜트 건설현장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와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임금 상승으로 설비건설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더 버티기가 어렵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최근 산업·환경설비공사사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유권해석을 잇달아 정부에 제출했다.

모든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이후 국내 건설현장은 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에서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건설현장의 산업·환경공사업체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기계설비건설업체 역시 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고용 허가를 건의해 왔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건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등의 합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특히, ‘플랜트 노조 반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가 합의해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최근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플랜트노조와 마찰을 반복하고 있는 설비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비건설업계는 플랜트노조와의 충돌로 이달 들어서만 충청권 3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11개 설비건설업체 가운데 4개사가,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건설현장에서는 7개사 가운데 5개사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현장에서는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앞서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6월 직장폐쇄가 발생했다가 7월 공사를 재개하고 8월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도 설비건설사 1곳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임단협이 진행되다가 휴식시간과 포괄임금제, 유급 휴일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노사 양측이 대립하다가 직장폐쇄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현재 일부는 작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직장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능인력 고령화로 생산성은 30% 이상 떨어진 반면 임금은 40~50% 이상 올랐다”며 “업체들은 계속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현장이 타결되면 가까운 현장뿐 아니라 전국의 플랜트현장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했지만, 포괄임금제 폐지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30분씩 쉬는 것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쉬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주·월차와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정규직도 아니고 근무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다 기술자들이어서 임금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장에 형성되는 단가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인상 등의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플랜트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플랜트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jskim@

그 빛을 나보고 갚으라고요? 中企 올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물품대금을 ‘외담대’로 받은 하청기업, 어느날 은행에서 날벼락이…
“원청업체가 안갚는 빛, 하청업체가 갚시오”
하청업체들, 그런 설명 제대로 못들었는데… 졸지에 빚더미에

핸드백을 하청받아 만드는 A중소기업 사장 김모씨는 올해 초 패션 기업 에스콰이아(법인 이름 'EFC')에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다. 그는 물품 대금 1억1000만 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이라는 형식으로 받았다. 외담대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원청업체)이 ‘조만간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하청업체에 발급하면,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아 쓰는 금융상품이다. 원청업체가 만기일에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은행에 지불하면 거래는 마무리된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대출이자 형식으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

연 9% 수준 이자를 미리 내고 외담대를 받아 쓴 김씨는 지난 7월 B은행으로부터 갑자기 “돈을 갚아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며 의아해 하자 은행 담당자는 “원래는 에스콰이아가 돈을 상환해야 하지만 에스콰이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다. 원청업체가 돈을 안 갚으면 하청업체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게 외담대인데, 모르셨느냐”고 설명했다.

핸드백 부품비 등으로 이미 받은 돈을 다 써버린 김씨는 결국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그는 법인카드가 정지되고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가 모두 봉쇄돼 사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김씨가 갚지 못한 돈엔 지금도 연 15% 수준의 연체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김씨는 “에스콰이아는 연초부터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었던 회사다. 그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을 썼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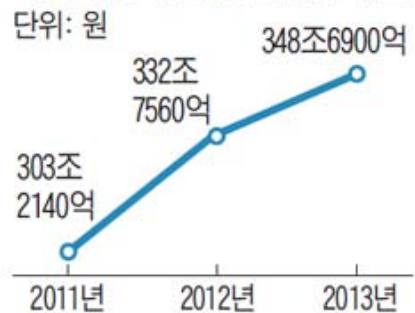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 위험을 중소 하청업체에만 몰아버리는 ‘외담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이런 규정을 담은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원청업체 부도 위험, 하청업체에 전가”

외담대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간편한 데다 기업 간 현금거래가 용이한 결제 수단이어서 그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1년 303조원 규모였던 외담대는 2013년 348조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외담대 거래를 하면서 원청업체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상환청구권'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에스콰이아의 외담대 거래로 현재 3개 은행에 5억6800만원을 갚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규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료: 금융결제원



※ 구매기업이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은 하청업체에 상환 요구

아야 할 상황이라는 가족업체 C사 사장은 “외담대 거래를 틀 때 깨알 같은 글씨의 약관을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다면 차라리 어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담대의 이런 특성을 악용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외담대를 실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지만, 외담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에 가해지는 제재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원청업체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상환청구권을 들어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돈이 나가는 시점에 하청업체에서 적지 않은 이자를 챙긴 은행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 하청업체에 지우는 셈이다. 에스콰이아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어음은 계속 상환하면서도 외담대는 연체되도록 내버려뒀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올해 1분기에도 139억원의 외담대를 실행했다.

은행들은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최대한 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상환청구권이 없다면 은행이 이런 상품을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경우 결국 예전 같은 어음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대책 마련 중”

기업은행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549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갚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았다.

금액은 784억원에 달한다. 현재 에스콰이아와의 외담대 거래로 은행에 돈을 대신 갚을 처지에 놓인 중소기업만 160개이고,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289억

원이다. 이 중 40개 기업은 현재 은행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에스콰이아를 인수한 사모펀드 H&Q아시아퍼시픽 코리아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H&Q의 재산 약 9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25일 집행했다. 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률사무소 ‘태우’의 도태우 변호사는 “H&Q가 돈을 갚지 못할 줄 알면서도 외담대를 실행했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투입 해서라도 외담대 사고 보상을 위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상환청구권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외담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외담대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기업만 주로 보험에 드는 역(逆)선택 탓에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900%까지 올라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

@김신영 기자

☞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건을 납품한 뒤, 하청업체가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물품 대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어음 돌려막기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건설경제

2014. 12. 2.

건설업계 “외국인력 고용 확대해 달라” 한 목소리

건협 “내국인 오지 등 기피, 5,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설비協 “기능인력 고령화 플랜트도 고용 허용해야”

건설현장 기능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설비건설업계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력의 수급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20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행 2,350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건설 외국인력 쿼터는 지난해 1,600명에서 올해 2,3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고용부가 50% 이상 확대에 난색을 보이면서 48%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산간·오지 건설현장에 일하러 오는 내국인이 없어 외국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산간오지 건설현장은 내국인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역시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공급 인력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대신 주로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 쿼터는 현행 5만5,000명에서 5만2,350명으로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도입을 2,650명 늘리는 대신 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2,650명 줄여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랜트현장은 아직도 고용 불허

대한설비건설협회는(회장 이상일)은 국내 플랜트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고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건설현장의 산업·환경공사업체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능인력 고령화로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임금은 50%까지 올랐다”며 “현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도가 아니고 외국인 인력이 기술을 유출할 수준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동요건 완화하고 유경험자 활용 늘려야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정 기간 만료’로 한정된 인력 이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겨울철에는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 이동시키거나 신규 개설 현장에 전환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재입국 시에는 동일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체로 배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현장이 폐쇄되면 재입국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늘고 있는 외국인 산재를 줄이려면 현장 유경험자의 선발이나 재입국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응도나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늘리면 산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도 지적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공사비 부족으로 요약된다”며 “적정공사비의 확보와 근로자까지의 전달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jskim@